

# 단체상해공제규정

2009. 08. 18. 개정 2020. 12. 9. 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이하 “공제회”라 한다) 정관 제27조제3의2호에 의하여 공제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단체상해공제사업(이하 “상해공제”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상해공제의 업무처리에 관하여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3조(사업의 정의)** 상해공제라 함은 회원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보조하는 자가 사망 및 상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피해보상을 공제회가 손해보험사와 단체상해보험을 체결하여 보상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4조(업무의 분담)** ①공제회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상해공제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회원을 대리하여 손해보험사와 단체상해보험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에 필요한 보험료를 공제회의 재원으로 우선 납부한다.

②회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결된 보험료상당의 상해공제회비(이하 “공제회비”라 한다)를 공제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손해보험사는 회원에 대하여 보상접수, 보상심사, 보험금 결정 및 지급업무 등을 수행한다.

④보험에 관련된 일체의 권리·의무당사자는 회원과 손해보험사가 되며, 공제회는 제1항의 계약체결과 이에 따른 제2항의 공제회비 징수 및 권리·의무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문제해결을 위한 업무를 지원한다.

**제5조(공제등록 대상)** 회원이 공제등록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과 같다.

1. 회원의 업무수행을 하는 자가 사망 및 상해로 인한 상해공제
2. 회원의 업무수행을 보조하는 자가 사망 및 상해로 인한 상해공제

**제6조(공제등록 절차)** ①회원은 공제등록 대상 상해공제를 등록하고자 할 때에는 공제등록 신청서를 작성하여 공제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공제등록신청서에는 가입담보 및 담보별 가입금액 등을 정확히 기재하여 등록 당해 전년도 12월 31일까지 공제회에 일괄등록(이하 “정기등록”이라 한다)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중간에 등록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시로 등록(이하 “수시등록”이라 한다) 신청할 수 있다.

③공제회는 단체상해공제약관(이하 “약관”이라 한다)에 따라 회원이 공제등록 신청한 내용과 같은 조건으로 손해보험사와 단체상해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약관은 규칙으로 정한다.

④공제회는 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 결과를 정기등록의 경우는 예치보험료 납부일로부터 45일, 수시등록의 경우에는 등록일로부터 익월 15일 이내에 당해 회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공제회는 약관이 변경된 경우 손해보험사로부터 변경을 통보 받는 즉시 그 내용을 공제회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통보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회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공제기간)** ①공제기간은 정기등록의 경우는 매년 1월 1일 0시부터 12월 31일 24시까지로 한다.

②수시등록의 공제기간은 공제등록이 접수된 날 익월 또는 회원이 지정한 날의 0시부터 당해연도 12월 31일 또는 회원이 지정한 날의 24시까지로 한다.

③공제기간이 만료됨에도 변경, 해지에 대한 회원의 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다음 연도 정기등록으로 자동 갱신한다.

**제8조(공제회비 등)** ①회원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등록한 단체상해공제에 대한 공제회비를 공제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공제회비는 공제회와 손해보험사가 협의하여 할인한 금액으로 한다.

③공제회비의 납부기한은 다음 각호와 같이 한다.

1. 정기등록분은 당해연도 3월 31일까지로 한다.
2. 수시등록분은 등록한 달의 익월 말일까지로 한다. 단, 1월 등록분은 3월 31일, 12월 등록분은 12월 31일 이전으로 한다.

**제9조(보험금 지급)** ①보험금 청구사유가 발생하여 회원이 이를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손해보험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보험금 청구서(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사망진단서, 장해진단서, 입원치료확인서 등)
3. 주민등록증,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부착된 정부기관 발행 신분증
4. 기타 보험금 등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 신청서류를 접수한 손해보험사는 지체없이 보험금 지급액을 결정하고 이를 3영업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보험금지급에 필요한 조사를 동 기간내에 마칠 수 없거나 회원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손해보험사가 추정한 보험금의 50% 이상을 가급보험금으로 우선 지급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한 지급기일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다음날로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정기에금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보험금에 더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제10조(보험금 보상한도액)** 손해보험사가 지급하는 보험금은 공제등록신청서에 기재된 담보별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한다.

**제11조(손해의 통보)** ①회원은 사고가 생긴 것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공제회 또는 손해보험사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회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고지의무를 게을리 함으로써 늘어난 추가비용은 보상하지 아니한다.

**제12조(공제등록의 해지)** ①공제등록 내용의 변동 및 그밖에 공제등록의 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해지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지는 등록회원으로부터 그 통지를 접수한 날에 해지된 것으로 본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공제가입이 무효, 효력상실 또는 해지된 때에는 잔여기간에 대하여 공제회비를 일할계산하여 환불한다.

**제13조(공제등록의 무효)** 공제가입을 신청할 때에 아래와 같은 사항이 있으면 이 가입은 무효로 합니다.

1. 회원, 피공제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의 사기행위가 있었을 경우
2. 공제가입을 신청할 때에 회원, 피공제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이 공제사고가 이미 발

생하였거나, 사고의 원인이 생긴 것을 알면서도 이를 사기의 목적으로 공제회에 알리지 아니하였을 경우

**제14조(적립금 조성)** 상해공제사업의 적립금은 상해공제회비, 이식금 그 밖의 수입 등으로 조성한다.

**제15조(위임 및 준용)**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거나 관련 법규 등을 준용할 수 있다

**부 칙 <규정 제176호, 2009.8.18.>**

이 규정은 200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273호, 2020.12.9.>**

이 규정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 단체상해공제규칙

제정 2009.08.26    개정 2009.12.08  
개정 2010.02.16    개정 2010.06.18  
개정 2011.04.25    개정 2015.01.26  
개정 2016.02.25    개정 2017.01.24  
개정 2017.05.17    개정 2018.01.17  
개정 2019.01.15    개정 2021.01.12  
개정 2021.08.23    개정 2021.12.20  
개정 2022.01.19    개정 2023.01.17  
개정 2024.01.05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이하 “공제회”라 한다.)의 단체상해공제규정에 의한 단체상해공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약관 및 요율서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약관의 적용)** ① 단체상해공제규정 제6조제3항에 의한 약관은 [별첨1]에 의하여 적용한다. <개정 2009.12.8., 2010.2.16., 2016.2.25., 2017.5.17., 2021.1.12., 2021.08.23., 2021.12.20., 2023.01.17., 2014.01.05.>

② 위 제1항의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 법규 등을 준용하며, 그 외의 사항은 손해보험사와의 협의에 의하여 처리한다.

**제3조(공제회비의 적용)** ① 단체상해공제규정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공제회비는 [별첨2]의 요율서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9.12.8., 2010.2.16., 2010.6.18., 2011.4.25., 2015.1.26., 2016.2.25., 2017.1.24., 2017.5.17., 2018.01.17., 2019.01.15., 2021.1.12., 2022.1.19., 2023.01.17., 2014.01.05.>

② 위 제1항의 요율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보험요율에 대하여는 간사보험사와 협의한 협의 요율에 의하여 결정한다.

**제3조의2(공제회비의 납부유예)** 회원이 예산 미확보와 같은 부득이한 사유로 부과된 공제회비에 대하여 납부유예를 요청하는 경우 유예할 수 있다. 다만, 납부유예는 공제등록기간 중으로 한다. <신설 2021.8.23.>

**제4조(공제등록 및 해지)** ① 공제회는 단체상해공제규정 제6조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제등록신청서를 접수받아 공제등록 및 관리업무를 수행한다.

②공제회는 단체상해공제규정 제12조에 의한 해지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공제등록을 해지할 수 있다.

**제5조(사고처리 및 보험금 지급)** ①공제회는 단체상해공제규정 제9조에 의하여 회원으로부터 사고통보를 접수한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손해보험사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공제회 또는 회원으로부터 직접 사고통보를 접수한 손해보험사로 하여금 사고조사 및 보험금 지급업무를 처리하게 한다. 다만, 공제회는 손해보험사에서 별도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이에 필요한 업무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참여기관의 선정 등)** ①기관의 선정은 공제사업 개발 참여, 재무건전성, 신용평가등급, 참여요율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②참여기관의 지분은 신용평가등급, 사업안정성, 재무건전성, 수익성 등을 고려하여 차등 적용 할 수 있으며, 매년 별도 계획을 수립하여 결정한다. 다만, 사업 운영에 장애가 되는 사항이 발생할 경우 해당기관에 대하여 참여 제한 등을 할 수 있다. <신설 2019.1.15.>

**부 칙<규칙 제167호, 2009.8.26.>**

이 규칙은 200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규칙 제168호, 2009.12.08.>**

이 규칙은 200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규칙 제172호, 2010.2.16.>**

이 규칙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규칙 제179호, 2010.6.18.>**

이 규칙은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규칙 제190호, 2011.4.25.>**

이 규칙은 201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규칙 제255호, 2015.1.26.>**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규칙 제270호, 2016.2.25.>**

이 규칙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규칙 제291호, 2017.1.24.>**

이 규칙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규칙 제318호, 2017.5.17.>

이 규칙은 2017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규칙 제319호, 2018.1.17.>

이 규칙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규칙 제418호, 2019.1.15.>

이 규칙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규칙 제467호, 2021.1.12.>

이 규칙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규칙 제477호, 2021.8.23.>

이 규칙은 2021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칙 제491호, 2021.12.20>

이 규칙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칙 제497호, 2022.1.19>

이 규칙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칙 제521호, 2023.1.17>

이 규칙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칙 제551호, 2024.1.05>

이 규칙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